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66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남희 · 박희승 · 임오경
송재봉 · 송옥주 · 박상혁
한정애 · 김우영 · 용혜인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총액 개념의 활동 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음.

이 같은 착시효과로 말미암아 정부는 노임 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인력 처우 문제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는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나.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삭제).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라.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안 제31조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관리방안
3.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제3조제4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 중 “제6호”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청구하고”를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로, “지급하여야”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을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활동지원등급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 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u>「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 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u> ③ (생 략) <u><신 설></u>	제3조의2(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u>제3조의3(장애인활동 지원 기본 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 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1. 활동지원급여 대상인원 및</u>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재원조달 계획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
력 관리방안
3.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
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제3조제4항에 따른 활동지원인
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활

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

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활

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

<신 설>

② ~ ⑤ (생 략)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
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
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
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
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제6
호부터 제9호까지-----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

-----활동지원
인력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u>지급하여야</u> 한다. ② ~ ④ (생략)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 비용은 <u>활동지원급여의 종류</u> <u>및 활동지원등급</u> 등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② · ③ (생략)	<u>운영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u>-- -----<u>구분하여 지급하여야</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 -----<u>활동지원급여의 종류,</u> <u>활동지원등급 및 활동지원인력</u> <u>의 적정 인건비 기준</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